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 1106 호
2013년 5월 3일 금요일

조 례

- 조례 제114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2
부 개정조례
- 조례 제114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 5
- 조례 제114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조례 제114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14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조례 제114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18
조례
- 조례 제114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20
관한 조례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5월 3일

남동구 조례 제114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하여” 를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추천한 자” 를 “추천한 사람”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하여” 는 “따라”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사실장” 을 “기획예산실장” 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중 “(임·직원의 겸업금지)” 를 “(임직원의 겸업금지)” 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구청장의” 를 “구청장” 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23조 중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1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1항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2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의해” 를 “제3항에 따라” 로 하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의한” 을 “법 제66조의2의” 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4항에 따라” 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내에” 를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사항에 대하여는” 을 “사항은” 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 일부 개정으로 도시관리공단 내 감사의 자격 기준을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의 결산 기간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공단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비상임 감사 임명기준 개정 (제10조제1항)
 - 감사실장 → 기획예산실장
- 상위법령에 따른 결산기간 변경 (제28조)
 - 3월내 → 2개월 이내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5월 3일

남동구 조례 제114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 는 “제29조제5항에 따라” 로, “규정 함” 을 “정함”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 “보조금” 이라 함은 구 ” 를 “ “보조금” 이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 라 한다) ” 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 “보조사업” 이라 함은 ” 을 “ “보조사업” 이란 ” 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 “보조사업자” 라 함은 ” 을 “ “보조사업자” 란 ” 으로 한다.

제3조 중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을 “보조금의 관리” 으로, “의한다”

는 “따른다” 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 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을 “국·시비 보조재원에 따른” 으로, “국가” 를 “국가나 인천광역시” 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보조신청)” 을 “(보조금 신청)” 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전항의” 를 “제1항의” 로 한다.

제5조제2항제8호 중 “수입될 수입금” 을 “발생될 수입금” 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를 “제7조의 교부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 내용을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조지령” 을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기” 로 하고,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9조 중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 을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월별 또는 분기별” 로 하며, “사업년도” 는 “사업연도” 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보조사업 지원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계약체결 등)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또는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감소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를 “감소비율에 따라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보조사업의 사후평가) ① 구청장은 매년 제4조에 따라 추진하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에는 해당 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 본문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성공”을 “목적달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조례에

의한”을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5호 및 제6호) 중 “허위”는 각각 “거짓”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과 계약부문 준용,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 사후평가 등을 규정하여 보조금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보조금 관리 및 집행 신설 (제9조의2)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 계약체결 등 신설 (제9조의3)
 - 계약부문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준용
-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의 구체화 (제11조부터 제12조)
- 보조사업의 사후평가 (제12조의2)
-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한 관리 감독 명문화 (제13조의2)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5월 3일

남동구 조례 제114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위원”을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0조제3항 중 “위원은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를 “위원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 중 “구청장”을 “동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구청장” 을 각각 “동장”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제9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2013년 9월 5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제20조에 따라 2013년 6월 9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2013년 재위촉된 위원은 연임한 것으로 본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주민참여예산제 첫 시행 후 2년간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 임기규정에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제9조제4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해촉사유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신설 (제10조제2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삭제 (제10조제3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규정 삭제 (제11조제2항)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설치 및 위원 위촉 관련 기존 『구청장』을 『동장』으로 개정 (제18조, 제20조제2항 및 제3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부칙 신설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5월 3일

남동구 조례 제114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후 인수받은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및 사업시행자가 기부한 비용부담금과 물납토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이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67-4번지 일원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에서 사업시행한 지역의 공공시설로 그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세입)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비용부담금
2. 기부채납 토지 매각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사업지구내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2. 기타 관련 사업비

제5조(사업의 주체) 사업의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 : 청소과
2. 고잔동 372-25번지 일원 침수해소사업 : 건설과
3. 기반시설 유지 보수 : 건설과, 공원녹지과
4. 공원시설 보완 조성 : 공원녹지과
5. 남동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 남동문화예술회관
6.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지출 등 회계관리 : 기획예산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제3조 및 제4조에 관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회계 징 수 관 : 기획예산실장
2. 특별회계 경 리 관 : 기획예산실장
3. 특별회계 채권관리관 : 기획예산실장
4. 특별회계 채무관리관 : 기획예산실장
5. 특별회계 지 출 원 : 예산담당
6.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예산담당
7.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예산담당
8. 특별회계 물품출납원 : 예산담당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7조(경리)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예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현황

구 분		면 적 (㎡)	구성비 (%)	책임전담부서	비 고
무 상 귀 속		1,394,632	100.0	-	-
	도 로	326,333	23.4	-	-
	2 0 m 이 하	209,637.2	15.0	건설과	-
	광 장	11,729	0.8	-	-
	일 반 광 장	3,719	0.3	공원녹지과	광1
	녹 지	61,216	4.4	공원녹지과	-
	연 결 녹 지	6,584	0.5		연1 ~ 연2
	완 충 녹 지	54,632	3.9		완1 ~ 완19
	공 원	994,189	71.3	공원녹지과	-
	근 린 공 원	966,237	69.3		고잔공원, 근1 ~ 근4
	소 공 원	6,446	0.5		어1 ~ 어8
	어 린 이 공 원	21,506	6.9		소1
	공 동 구	L = 1,155m		건설과	면적 : 9,755㎡
	하수도 (우수관로)	L = 19,742m		건설과	D450mm ~ BOX 2@4.0×1.5m
	하수도 (오수관로)	L = 10,623m		건설과	D400 ~ 600mm
기 부 채 납		128,586	100.0	-	-
기 반 시 설		16,317	12.7	-	-
	공 공 청 사	3,349	2.6	-	-
	공 3 (동 청 사)	1,735	1.3	총무과	-
	공5 (도서관(예정))	1,109	0.9	지식정보센터	-
	공7(공동구관리사무소)	505	0.4	건설과	-
	도 서 관	1,933	1.5	지식정보센터	도1
	문 화 시 설	9,432	7.3	문화체육과	문2
	쓰 레 기 집 하 장	1,603	1.3	청소과	쓰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후 인수받은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및 사업시행자가 기부한 비용부담금과 물납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 (제1조)
 - 사업시행자가 기부한 비용부담금과 물납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 마련
-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제3조, 제4조)
 -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비용부담금, 기부채납 토지 매각 수입금 등을 세입으로 함
 - 사업지구내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기타 관련 사업비를 세출로 함
- 사업의 주체에 관한 사항(제5조)
 - 사업별 담당 부서 지정
- 경리에 관한 사항(제7조)
 - 독립채산제 원칙이되,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보전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5월 3일

남동구 조례 제114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사람이 탈세, 체납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성실납세자증은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제2호 중 “자” 을 “사람” 으로 하고 “표창장” 을 “표창”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시행 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성실납세자 선정을 취소하는 근거 마련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사람이 탈세, 체납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정 취소 및 성실납세자증 회수 단서 내용 신설 (제5조)
- “표창장” 을 “표창” 으로 변경 (제5조제2호)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5월 3일

남동구 조례 제114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사무의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재난관리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련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지난번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전심의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전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전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전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전을 심의한 결과 안전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위원회 기능·구성에 관한 사항 (제1조부터 제3조)
- 위원회의 개최 및 위원임기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제4조부터 제5조)
- 위원회의 진행 및 상정안건심의방법 등을 마련함 (제6조부터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1조)
-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방법을 마련함 (제14조)